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폐지 예정(2020.6.4.)임에 따라 동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위임사항을 이관·규정하는 한편, 선박위치정보 활용 근거 미흡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폐지 예정 부령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 이관·규정(안 제9조, 제9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별표8, 별지2호 및 3호 서식)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작업의 허가 절차, 공사·작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음주측정 세부절차 및 음주측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규정함
- 나. 위치정보 공개가 가능한 전자적 수단 확대(안 제29조)
항해자료기록장치 외에 선박위치발신장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공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 다. 안전진단대행업 등록기준 변경(안 별표 7)
해상교통조사장비를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

가를 받은 항로표지의 설치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업무

제9조의2(공사 또는 작업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8과 같다.

제29조 중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
2.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음주측정 세부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신원 확인

2.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제3항 또는 제107조제2호의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제31조의3(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측정기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의 검증 또는 교정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결과를 출력·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7 제1호 비고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상교통조사장비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19조, 제42조 및 제48조 관련”을 “제9조의2, 제19조, 제42조 및 제48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록취소”를 “허가취소, 등록취소”로, “법 제23조제1항제1호”를 “법 제13조제3항제1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23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1호	허가취소			
2)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전부 또는 일부) 3 개월	업무정지 (전부 또는 일부) 6 개월	허가취소
4)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	법 제13조 제3항제4호	허가취소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공사(작업)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공사 (작업) 내용	목적			
	종류			
	방법			
	기간			
	장소			
	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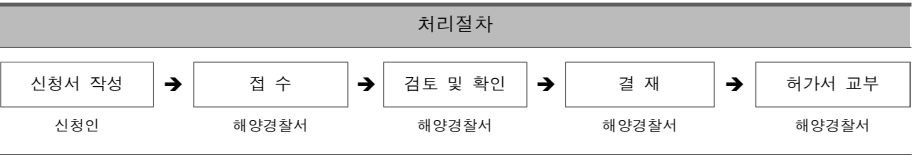
「해사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작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적의 해도를 말합니다) 1부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공사(작업)허가서

시행자	
목 적	
종 류	
방 법	
기 간	
장 소	
조 건	

「해사안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〇〇해양경찰서장 직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작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또는 작업 시작 30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 시작 전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 또는 작업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한 서류 2. 공사 또는 작업의 장소에 대한 위치도(5만분의 1 이상 축척의 해도를 말한다) 3. 공작물의 설계도면(평면도·단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신설>

의 공사(작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해사안전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하는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또는 같은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로표지의 설치
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의 구난작업 신고를 한 구난작업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로조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교통 및 해사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업무

제9조의2(공사 또는 작업 허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3

	<u>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8과 같다.</u>
제29조(자료기록장치 등) 법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를 말한다.	제29조(자료기록장치 등) ----- ----- ----- ----- 다음 각 호 ----- ----- -----. 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선박설비기준에서 정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 2.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1조의2(음주측정 세부절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신원 확인 2.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

	하는 경우 법 제104조의2제3항 또는 제107조제2호의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신 설>	제31조의3(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측정기 결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의 검증 또는 교정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측정결과를 출력·관리 하여야 한다.